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12. 11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11월 19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법령위반 및 불합리한 사항 보완
 - “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를 “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로 함 (안 제10조제2항)
-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
 - “여성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함 (안 제5조제4항)
 -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함 (안 제11조)
 - “생활지도계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함 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
- “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를 “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 로 하고
-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